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8

2026. 2. 2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12. 황영각 의원 등 6인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3.)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황영각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민 참여 기반 마련과 정책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나, 장기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서용)

가. 폐지취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9일 제정되었음.

○ 2009년 3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12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약칭 등 미비한 조문이 일부개정 되었음.

○ 조례에 따른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한편, 의회의 법률 자문 기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법률고문’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해석, 의안 심사·처리, 의정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주로 법률적·입법적 사안에 대한 자문 기능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정책·의정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구분됨**.

○ ‘의정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강남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회의는 위원장(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강남구의회 사무국이 수동적·소극적 행정이 주요 사유로 판단됨.

○ 2025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거나, 실질적 필요성이 없을 경우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본 폐지안이 제출된 것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의정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남구의회를 포함하여 총 10곳임.

- 종로구의회의 경우 2025년 9월 10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음.

(기준 : 2026.02.)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강남구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2-18	2009년 1회 구성, 운영 실적 없음
2	강동구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1-01	2012년 구성, 운영 실적 없음
3	구로구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03-28	구성 · 운영 실적 없음
4	금천구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01-11	2024년 구성, 운영 중
5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2016-11-03	2020년 구성, 운영 중
6	동작구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1-13	구성 · 운영 실적 없음
7	송파구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8-16	2014년 1회 구성, 운영 실적 없음
8	은평구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26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 준비 중
9	중구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2022-01-24	2024년 구성, 운영 중
10	중랑구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15-10-12	2017년 구성, 운영 실적 없음

다. 종합의견

○ 동 조례는 제정 이후 2009년 최초 위원회 구성 외에는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보임. 이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의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영 활성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성도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 후 그 운영 성과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의 존치 또는 폐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황영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8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황영각·김영권·김형곤·
한윤수·복진경·이성수 의원
(이상 6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민 참여 기반 마련과 정책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나, 장기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